

올해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보건정책

제 도 명	종 전	달라지는 내용
중대재해보고기한 단축 (2007.1)	•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재해개요 등을 보고	•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지방노동관서에 보고
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 방법 개선(2007.1)	•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 시 교통사고, 방화,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재해자수에 포함	• 방화,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및 「도로교통법」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
석면함유제품의 제조·수입·양도·제공 또는 사용 금지(2007.1)	〈신 설〉	• 지붕·천장·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 제품, 「자동차관리법」상 자동차용 석면 마찰제품 제조 등 금지
가중처벌제도 도입 (2006.9.25)	• 사업주가 안전·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	• 사업주의 안전·보건조치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과징금제도 도입 (2006.9.25)	• 안전·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	• 안전·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
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 대상 확대 (2006.10)	• 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사업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	•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※2007.9.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
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항목 변경 (2006.12.12)	• 폭발성·산화성물질 등으로 화학물질을 15가지로 분류 • 화학물질의 표시를 유해·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 등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음	•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을 폭발성·인화성 등 물리적 특성에 따른 분류(16가지), 건강유해성에 따른 분류(10가지) 및 환경유해성에 따라 분류 등 총 27가지로 세분화 • 화학물질의 표시 기준을 유해·위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림문자의 형태를 바꾸는 한편, 유해·위험 정도, 예방조치 문구 및 공급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 등